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42
----------	-------

발의연월일 : 2026. 2. 27.

발 의 자 : 김성회 · 김영환 · 이개호
이인영 · 김남근 · 김영진
조승래 · 강훈식 · 신정훈
윤후덕 · 이용우 · 최혁진
윤준병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하는 거소투표자 중 시각장애선거인은 이러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공받지 못하여 투표에 불편을 겪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거소투표제도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거소투표를 하는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현행 규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음.

이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거소투표자를 위하여 거소투표용지를 특수투표용지로 제작하여 발송하거나 투표보조용구를 거소투표용지와 함께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를 가진 거소투표자의 투표권을 온전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4조제2항 신설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第2項”을 “제3항”으로 한다.

-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거소투표자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소투표용지를 특수투표용지로 제작하여 발송하거나 투표보조용구를 거소투표용지와 함께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다.

제154조의2제1항 후단 중 “제154조제2항”을 “제154조제3항”으로 한다.

제156조제3항제1호 중 “제154조제2항”을 “제15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54조제3항”을 “제154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각장애를 가진 거소투표자에 대한 특수투표용지 등의 발송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8조제

5항에 따라 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